

의안번호	제 36 호
의결 년 월 일	2006년 11월 28일 【제176회】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11월 23일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 안건명

-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제정사유

-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조례범위 내에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결과의 인터넷공개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제정 주요 내용

-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조례안 제5조)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조례안 제6조)
- (의견수렴 절차)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조례안 제7조)
- (의견제출) 군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조례안 제8조)
-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조례안 제9조)

- (위원회 운영)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조례안제10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동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7. 입법예고(10. 23 - 11. 12)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제안자 의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군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 발췌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